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675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 명시	3

I. 개요

1.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67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용태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7. 1.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사업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국가 돌봄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의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가정 등 폐쇄적 환경이나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며 작업 중 사고, 근골격계 질환과 같이 중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산업재해 인정 또는 임금채불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 시 장기요양요원 개인이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제1호).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법률지원 근거 명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로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에 관한 법률상담,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생략)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u>지원</u>	1. ----- ----- <u>지원(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지원을 포함한다)</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적용례: 법률 상담에 관한 지원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소송비용에 관한 지원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하여 소송이 개시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

나. 검토의견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현행법¹⁾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로 하여금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2026년 7월 기준으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이 전국적으로 1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현황 >

구분	기관명	설치일	운영
서울	서울시 어르신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2013.9.	위탁 (보건복지 자원연구원)
인천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21.7.	위탁 (사회서비스원)
광주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23.9.	위탁 (사회서비스원)
대전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23.12.	위탁 (사회서비스원)
울산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22.2.	위탁 (사회서비스원)
경기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21.5.	위탁 (사회서비스원)
강원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21.12.	위탁 (사회서비스원)
충북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25.9.	위탁 (사회서비스원)
전북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22.10.	위탁 (사회서비스원)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분	기관명	설치일	운영
전남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23.11.	위탁 (사회서비스원)
제주	제주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24.1.	위탁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자료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의 일환으로 성희롱, 업무고충, 근로계약, 임금체불, 노동법 등에 대한 상담과 산업재해, 근로기준법,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현황 >

(’26년 사업계획 기준)

구분	권리침해 상담 및 지원 현황
서울	- 장기요양요원 노동·성희롱·업무고충 상담 - 성희롱·산재·종사자 인권·노동권 등 교육 진행 - 종사자 인권보호 역량 강화할 수 있는 컨설팅 지원(기관 지원)
인천	- 근로계약, 임금 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상담(정기, 긴급, 찾아가는 상담 등) (필요 시 구제·지원기관 안내 및 연계) -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관련 가이드북 제작·배부
광주	- 노무(근로계약, 임금체불, 연차·휴가 등) 상담 및 교육
대전	- 온라인 노무 상담 및 교육·컨설팅 지원
울산	- 울산노동인권센터와 연계하여 노무 등 컨설팅 진행
경기	- 노동상담(전화,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 등) 및 노동권리교육 등
강원	- 근로기준법, 인권에 대한 교육 지원
충북	- 노무관련 협력기관 및 공인노무사 연계 상담 지원 - 노무관계법령 교육 및 노사관계 전략 수립 컨설팅
전북	- 노무 상담 지원(대면, 유선, 온라인 상담 등)
전남	- 노동법 관련 상담 지원
제주	- 전용 상담 전화 운영(1차 기본상담, 2차 전문가 연계(변호사·노무사 등))

자료 : 보건복지부

- 그런데 단순 상담이나 교육 외에 산업재해 인정,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법률상담, 소송비용 지원과 같은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참고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간 직원의 업무상 질병이나 상해를 경험한 기관은 11.1%로 직원의 업무상 질병이나 상해 발생 경험이 있는 기관에서는 평균 1.4건이 발생한 바 있어 산업재해와 관련한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언론보도²⁾에 따르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에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로서 법률상담, 소송비용 지원 등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법률지원을 명시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그런데, 법률상담과 같은 법률지원은 현행법에 따라서도 가능한 측면이 있음. 앞서 살펴본 상담 및 지원현황에 따르면 근로계약, 임금체불, 노동법 관련 상담이 이미 현행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소송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소요와 관련된 우려를 제기³⁾하고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요양뉴스, [단독] 임금 체불한 방문요양센터장에 승소한 입주 요양보호사…“센터는 여전히 운영 중”, 2025.2.7.

<http://yoyan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29>

매일노동뉴스, 밤새 일 시키고 최저임금 미지급, 노인시설 대표 ‘별급형’, 2023.9.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64>

월간장기요양, “요양보호사에 제대로 된 임금 지급하라”, 2022.9.25.

https://www.carekim.com/news_view.jsp?ncd=643

매일노동뉴스, 요양보호사 임금 5억원 체불, 형량은 ‘징역 1년’, 2022.07.13.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15>

3)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의견 참고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대다수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는 법률·노무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환경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존의 “상담 및 지원”은 법률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번 개정은 기존 문언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수준에 불과하여 개정을 통해 얻는 실익이 크지 않음. 또한, 소송 종류·지원 한도 등 구체적인 기준 없이 법률지원을 명문화하는 경우, 장기요양요원이 이를 법적 권리로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향후 법적 다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서울특별시

- 동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재원 조달방안 및 비용 부담주체, 지원 대상·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국비 등 안정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명시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또한, 법안 내 ‘법률지원’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부칙에 따른 소급 지원 가능성이 존재함

을 고려할 때, 지원범위·대상·내용·요건 등에 대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상담, 교육, 심리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음. 이로 인해 장기요양요원(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객관적 사실 파악이 어렵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실확인 권한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사 권익옹호기관들은 실효성 있는 상담 및 조사를 위해 일정 범위의 사실확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 현재 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해 도비를 추 가지원(역량강화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하여, 국비 대비 도비 투입 비율(22:78)이 높은 상태이므로, 법률 지원(소송비용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 증액은 재정상 진행하기 어려움. 개정 시 소송비용 지원 대상자 범위를 명확할 필요성이 있음.

□ 충청북도

- 장기요양요원 권리침해에 관한 법률 상담 지원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와 계약된 변호사 및 노무사를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또한, 소송비용 지원의 요건·한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에서 사업규모 및 소요예산 예측이 불가능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운영예산의 80% 이상이 지방비로 운영하고 있어, 막대한 지방 재정 부담 발생이 우려됨.

□ 인천광역시

- 장기요양 현장의 분쟁은 일반 근로관계(임금체불, 산재 등)를 넘어 노인학대 의심 사건, 장기요양요원과 수급자·보호자 간 분쟁 등 민·형사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이 다수 포함됨. 이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소송비용만을 지원할 경우 상대 당사자인 수급자 및 보호자의 반발과 행정의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큼.
- 또한, 소송비용 지원 시 당사자 간 합의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소송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심급(1~3심)에 따라 필요금액 예측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 지원 시 지방재정 부족이 초래될 수 있음. 현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국비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비 지원부족으로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의 90%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법 제47조의2를제2항제1호를 “현행유지”하되 소송 전 분쟁을 예방하는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대전광역시 및 대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민사 등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의무규정에 관한 합리성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시도별 지원 대상·범위·절차 등 지원기준 상이에 따른 형평성과 적정성 문제로 또다른 민원 발생 우려가 크며, 현행 규정에 따른 센터의 권리침해 상담, 법률상담 연계 및 권리구제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대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실제 장기요양요원들의 법률 지원에 대한 수요가 없고, 단순 민원이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비 지원 요구 가능성이 있어 센터 본연의 역할(교육, 건강관리, 휴식 지원 등) 수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음. 아울러, 국비 지원 비율이 낮아 예산의 대부분을 지자체 재정에 의존 중이며, 지자체 상황에 따른 예산 변동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행 유지가 타당함.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며 찬성함. 다만, 법률지원의 대상, 범위, 비용 부담 주체 및 기관과 종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개정안은 법률지원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 간 노동분쟁까지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확대해석될 가능

성이 있고, 장기요양기관 역시 다양한 법률분쟁과 민원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형평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공인노무사회

- 초고령사회의 돌봄을 담당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지원을 제공할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입법취지에 찬성함. 다만 예시된 지원이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에 머물러 분쟁 초기의 가장 핵심적인 노동행정 단계의 대리인 조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찬성하되, 법률지원의 범위에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과 행정단계 권리구제 절차의 대행·대리 및 그 비용의 지원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그 업무를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3항·제4항은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안함. 이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영세 장기요양기관의 법적 위험 경감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것임.

문 의 처
02)6788-5503